

철근·콘크리트공사업

■ 업무내용

철근·콘크리트로 토목·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

Ex)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, 콘크리트공사,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,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,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(PSC)구조물공사,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·기계화 경작로·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| 법인 | 개인 |
|----------|----------|
| 1.5억원 이상 | 1.5억원 이상 |

2. 기술능력

| | |
|---|--|
|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| |
| 기술사 | 용접 |
| 기사 | 용접 |
| 산업기사 | 용접, 굴삭기, 토목제도, 포장, 방수, 건축일반시공, 건축제도, 비계, 건축목공, 철근 |
| 학경력자 | 토목분야(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), 건축분야(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) |
| 기능장 | 용접,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|
| 기능사 | 용접, 특수용접, 굴삭기운전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,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포장, 전산응용건축제도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철근, 방수 |
| 기능사보 | 전기용접, 가스용접, 특수용접, 콘크리트, 포장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철근, 방수 |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공제조합

2022.03.30 기준

| 업종 | 1좌당 | 자본금 | CC등급 이상 | C등급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| 940,858원 | 1.5억원 | 43좌 (40,456,894 원) | 54좌 (50,806,332 원) |
| 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 | | | | |

4. 시설·장비

| 사무실 |
|---|
|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 |
| 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|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